

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「**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**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4. 11. 12.

임실군의회의회장

## 1. 제정이유

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임실군 지역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시책에 반영 임실군 농어업 농촌 발전에 기하고자 제정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운영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회의 및 심의 건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16조,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협의 : 예산담당
- 라. 기타 :
  - (1) 입법예고 : 2014.10. ~ 2014.10. (21일간)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-11262(2014.10.16)비규제
  - (3) 비용추계서 : 불임
 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불임
  - (4) 관련법령 발췌문 : 불임

##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한다.

1.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·개발·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
2.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
3.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
4. 농업관련 각종 민원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지역농업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, 축산치즈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군의회 의원 2명 이내
2.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관련 전문가 2명 이내
3. 농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
4.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이내
5. 선도농가 또는 농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6명 이내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

1.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
2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제6조(운영위원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장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으로 하고,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농민단체 임원 중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이내
2. 지역농업특화사업단·축산치즈과·농업기술센터 각 주무담당 3명
3. 농업관련 전문가 1명 등

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
2.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실무회의
3.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로 한 사항 협의

제7조(회의 및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1 이상 발의 시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

③ 운영위원 회의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위원장이 소집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)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

③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『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 위 축 장

주 소 :

성 명 :

귀하를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20 년 월 일

임 실 군 수

##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해당사항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)

#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

#### 4. 작성자

지역농농특화사업단장 김학모



#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4A전북임실050			
정책명	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	
	부서명	지역농업특화사업단		
	담당자명	박희을	전화번호	063-640-2412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지역농업특화사업단 )		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역농업혁신위원회 활동은 여성과 남성 농업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. 최근 여성농민들의 비중이 51%에 이르고 있음. 따라서 성별을 고려한 농업혁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.</li> <li>▪ 위원회 업무 수행 시에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. 아울러 군수의 책무에 위원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시 성별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▪ 따라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</li> <li>▪ 또한 위원회나 운영위원 위촉 시 여성농민단체가 참여하여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.</li> </ul>			
검토의견 반영 결과 (기획감사실)	제3조(구성)제1항 협의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 하겠으며, 제6조(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)제2항 운영위원 위촉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,			
<p>2014년 11월 05일</p> <p><b>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</b></p> <p>분석평가책임관 귀하</p>				

□ 지방자치법 제116조,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,2호

제116조의2 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0조 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